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통해 본 건축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Korean Architecture

국내외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그동안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양적팽창에만 매달려 왔던 우리 건축계의 지난 과거와 현실을 참담한 심정으로 뒤돌아보게 하고 있다.

사고이후 우리사회 전반은 건설·건축분야 뿐만이 아닌 정치, 경제, 교육 등 총체적 분야에 걸쳐 자기반성과 '더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변화를 찾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같은 어이없는 참사를 당하고서도 우리사회 전반의 의식과 관행 및 제도적 변화가 뒤따르지 않고서는 우리의 장래는 삼풍사고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암담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지는 이번 사고를 통해 다른분야는 차치하고라도 한국건축계 전반에 걸쳐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누적되어만 가는 문제점들과 장애요인들을 진단해 보고 이에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註)

- 건축기준 수준을 높이자 / 김우성
- 건축전문가의 문제점 인식 / 신동우
- 적당주의부터 뜯어 고치자 / 전태수
- 감리제도의 개선책 / 원종일
- 감리의 책임과 개선방향 / 박무일

# 건축기준 수준을 높이자

Raises The Level of Architectural Standards

金宇成 / 아키프렌건축  
by Kim Woo-Seong

감사원의 부실공사 원인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설계에 의한 부실이 전체의 45%정도가 된다고 한다. 토목, 건축 등을 망라한 통계치이겠지만 건축부문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설계 뿐만 아니고 감리까지 설계자가 같이 해야된다고 주장하는 건축사들의 입장이라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까지도 건축사들이 거의 떠맡게 된다.

실제로 외국에서 부실공사가 예방되는 주된 이유는 한국건설회사 등이 외국공사에서 경험한대로 건축사(설계자겸 감리자)등의 철저한 프로정신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축사제도도 외국의 것을 도입하였겠지만 외국에서와 같이 원래 취지에 충실한지 의문스럽다.

우리의 건축사법을 살펴보면 건축사법 제1조(목적)에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사 헌장”에는

첫째가 造形創作藝術人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문화창달에 이바지 한다고 되어있고

둘째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의 개선, 세번째에 가서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해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외국의 건축사 면허제도와 근본취지는 건축사 등을 위한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건축물이 잘못 설계·시공되어지면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만들어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건축사 자격기준에는 예술성이다, 창작성이다 하는것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주로 구조, 방재 등 건물의 안전에 관한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술가나 음악가가 면허가 필요없듯이 조형예술로서의 건축은 별로 심의대상이나 자격기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격의 본

권을 감안한다면 “건축사는 조형예술 창작인이어야 한다”는 건축사 헌장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외국에서의 건축법은 일반대중들의 이용도에 따른 용도구분을 하여 이에따른 건물의 구조, 재료, 방재 등에 관한 기준을 다루고 있고,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 법만 따라서 해도 설계가 저절로 될 정도로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허가를 내는데 심의를 한다든지, 공무원이 일일이 도면을 검토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건축사가 법규기준 적용 여부만 확인하여 허가가 나도록 되어있다. 우리는 매건물마다 구청심의회, 본청심의회, 건설교통부심의회 하는 온갖 심의 검토절차가 수십 가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은 바로 건물 설계기준이 자세히, 명쾌하게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각종심의를 통해 설계를 어느 수준이상으로 끌어 올리자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많은 부조리를 낳을 수 있는 제도다. 그리고 과정에서 설계심의자의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 심의하다보니 “건물이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한다. 이 또한 설계부실을 낳는 원인중에 하나다. 건축주는 설계를 잘하는 사람 보다는 인허가(심의 +허가)를 능숙하게 처리해 내는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설계의 질은 뒷전이 된다. 더욱이 인허가 과정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다 보니 설계의 질(Quality)은 관심밖이다.

우리의 설계 내용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부실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설계사무소에서 해온 기본설계가 국내에서 한 실시설계도면보다 양과 질에서 훨씬 앞서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의 설계가 외양만을 대충 그려내기 때문에 부실한 설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설계의 수준을 100이라고 할때 우리는 50도 채 안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수준의 설계로는 시공회사들이 “적당히” 시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그리고 감리원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설계가 애매하게 그려진 거라면 시공 품질을 감리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서 품질 보증은 기대할 수가 없어 진다.

계약서라든지 시방서를 보더라도 내용이 부실하여, 어떻게 어떤 자재를 써서 시공하라는 것인지 정확히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대개는 끝에다가 “감독관이나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라는 사족 등을 여기저기 붙여놓은 경우가 많다. 이런것들이 부실시공 내지 부조리를 공공연하게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같은 자재라도 모델별로 가격차가 천차만별인데 이와

같이 애매하게 설계하다보면 시공자는 가장 “짜구려”를 선호하게 되고 이로인한 덤핑수주는 부실공사를 불러오게 된다.

설계자가 정확하게 자재를 시방하였을 경우뿐 아니라 시공자가 공인된 검사기관을 거친 자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물며 현재같은 제도와 관행으로는 거의 모든 건축물 생산과정에 부실시공 및 부조리가 관행처럼 일반화 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오히려 자연스런 결과이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레미콘이 공인기관에서 검사해준 업체에서 생산했는데도 기준에 미달한 불량품을 공급하여 구조체가 부실하여졌다면 검사해준 공인기관이나 레미콘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시공회사, 감리자, 설계자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 건설에 소요되는 각 자재는 자재별로 공인 검사기관에서 최소기준을 정하여 이를 지켰다는 공인표시만 있으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설계자는 공인된 기준이상의 자재를 시방하고 감리자는 서류상으로만 공인된 자재사용을 했다는 시공자의 확인서만 믿는 것만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해지지는 것이다. 시공자가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실제로는 몰래 짜구려를 사용,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감리자가 감리를 잘못했다는 책임을 묻도록 되어있는 현행 감리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열사람의 경찰이 한사람의 도둑을 감시하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거짓 시공하는 것을 일일이 확인해야만 할 책임이 감리자에게 넘겨진다면 시공현장의 인부들마다 감리자가 한 사람씩 따라 붙어도 불가능할 것이다. 감리자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라든지 서류상으로 책임소재가 애매하다든지, 또는 설계할 당시의 현장 상황과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든지 하는 역할에서 끝나야한다. 시공자재, 시공방법을 직접 챙겨서 현장을 끌고 가야하고 책임져야한다면 그는 감리자가 아니라 현장 소장으로서 시공회사의 월급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는 설계가 부실하니 감리단계에서라도 보완하겠다는 제도이지만, 그러다보니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더 비싸지는 우스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볼수 없는 현상이다.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책임시공하게 하고 부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리자는 설계나 시공 연결역할(Coordin-

ator)로 그쳐야 한다.

건축사들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시공감리과정까지 기록을 철저히 유지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무모한 건축주나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계획설계 과정에서부터 프로그램이 왔다갔다하여 수시로 용도가 변경되고, 규모가 바뀌고 하다보면 설계를 여러번하게 되고, 이로인해 비용도 늘게된다. 또 설계기간도 충분치 못하다보니 건축주나 인허가 기관의 요구에 의한 문제도 파생된다. 이럴경우 충분한 기록이 남지 않으면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또한 설계란 모든 자재의 종류의 공법을 망라하여 파악한 상태에서 도면을 그릴 수 없으므로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회사에서 시공도(Shop Drawing)를 제출토록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준공검사후 시공회사로 하여금 준공도(AS-Built Drawing)로 작성 제출토록 하여 실제 시공된 상황을 기록하여 추후 용도변경 등 사후관리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시공과정에서 제출된 각종 시험성적 및 검사서 현장사진등을 첨부하고, 준공후 사후관리 메뉴얼을 각 장비별, 건물 부문별로 작성 제출케 하여야 한다. 건물은 수백, 수천가지의 자재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집합체이므로 각기 특성과 수명이 다 다르다. 그리고 유지관리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와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 또는 교체를 적절히 할 수 있는 메뉴얼 작성도 필수적이며 사후 문제시 책임소재도 명확하여 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각종 법규에 얽매어 각종 기관으로부터 인허가 과정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명료하게 통합된 법규나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 각종 심의도 심의의 목적에 맞는 심의기준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면, 그리고 준수했다는 확인만 받으면 승인해주는 제도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선진국처럼 부조리의 온상인 심의를 철폐하여야 한다.

- 건축과 연관된 구조, 설비, 소방, 토목, 조경, 교통, 도시계획분야도 전문 기술사협회 등을 통해 각 분야의 기준을 상세하게 작성토록 하여 기준에 의한 설계가 가능토록 하여 심의를 없애고

- 각종 계약서가 “깍”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하거나 모든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도록 각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든 계약서를 만들어 책임소재와 역할이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선진화되어야 한다. 도면의 작성기

준, 표준상세도, 매뉴얼, 표준시방서(Master Specification) 등이 연구되어 설계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본 연구가 되어야 한다.

- 건축설계는 각종 자재의 결합이라고 볼때 각종 자재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기준이 명확하면 공인 검수기관의 부실검수도 예방될 수 있다.(미국의 ASTM과 같은 기준)

- 이러한 자재들을 비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 건축자재 목록을 개발한다면 건축자재시장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기준들이 각 단계별, 분야별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官에서 주도하면 행정편의주의식으로 되기 쉽고,

學에서 주도하면 현실과 멀어질 수 있고,

産에서 주도하면 집단 이기주의적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이 궁극적으로는 일반대중, 건축물의 소비자들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수긍이 갈 수 있는 합리적이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구성체에서 기본골격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삼풍백화점사고'의 희생자들은 건축관계 모든 사람의 제물이 되었다. 조금이라도 이들의 희생을 위로하고 갚아나아가려면, 건축관계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비록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밑에서부터 다져 올라가는 기본적인,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모든 건축관계 활동 즉, 인허가, 심의 설계, 감리, 시공, 자재들의 '기준'을 하루빨리 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건축전문가의 문제점 인식

Architectural Specialist's Awareness for Problem

申東宇 /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  
by Shin Dong-Woo

삼풍백화점의 참사와 함께 우리사회에는 실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의 사고임에도 이것을 보는 시각이 사람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축을 전문 분야로 하는 건축 전문가들에게 이

번 사고는 남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회의 건축을 책임져야 할 건축전문가들이 이 사고에 대해 갖는 인식은 이러한 사고의 사후 대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은 사회적인 여론이나 정치적인 필요성 보다는 철저한 직업 의식에 기초한 전문가들의 올바른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건축계와 건설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왔다. 적어도 건축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의견은 건축의 여러분야 중에서 직접 책임 공방이 일고 있는 설계자, 구조기술자, 시공기술자의 세가지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속한 분야의 문제점과 건축 전반에서 그 문제점이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을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한다.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들 사이에서는 건축이 많은 건축주들의 간섭에 의하여 설계의 전문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토목과 건축이 엄연히 다름에도 사회적인 인식이 이것을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는데 대한 불만, 건축에 관한 행정이 전문성이 결여된 채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 등을 많이 지적하게된다. 또 건축사의 제한된 역할을 탈피하자면 건축사에게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구조기술사들 역시 이번 사고를 보면서 지금까지 건축 설계자 위주의 건축설계 실무에 강한 비판과 함께 설계와 시공의 실무과정에서 구조기술자의 역할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그들은 이번의 사고 자체가 구조적인 결합에 의한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고, 그 동안 건축사와 구조기술자와의 사이에 불합리했던 실무체계를 구조기술자의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의 시공기술자 역시 현재 불합리한 설계가 시공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설계의 불완전을 시공기술자가 현장에서 보완하기도 하지만 그 업무 한계가 매우 모호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모두 시공자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시공 현장의 문제는 설계자와의 책임 한계의 문제 이외에도 우리의 열악하고 특수한 건설업 환경에서 기인하는 무수히 많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은 나름대로의 상당한 설득 근거를 가지고 있어 최소한 그 자체가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별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건축계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명쾌하게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방향으로 토론이 계속될수록 건축의 제 분야 간의 이해가 드러나고 결국은 건축의 실무에서 주도권을 놓고 각 분야가 대립하는 것으로 비쳐지기가 십상이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주장들과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 사이에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는 우선 문제점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번 사고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그 문제점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실 문제 해결(Problem-Solving)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 정의의 적정성과 독창성은 그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사건이 구조물의 붕괴라는 물리적인 현상이었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문제점의 정의는 또 다른데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대책 마련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흔히 복잡한 문제점에 접근하는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가 시스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제점 현상을 개별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들과 이들이 모여져 전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시스템으로 합성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이론에 의하면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시스템과 각 시스템 간의 복잡한 상호 연관성으로 정의된다. 이때 우리는 문제점이 과연 개별시스템의 성능 자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사이의 연결부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다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 이번 사고의 원인도 바로 이러한 시스템 개념에 의하여 접근해 본다면 문제점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건축물을 공급하여 유지관리하는 과정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한 무수히 많고 복잡한 개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구조계획, 환경·설비계획, 방재계획, 시공자 선정, 시공, 보수·보강, 하자 및 유지관리,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개별 시스템 내부에서 활동하

며 그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들 자체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시스템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문제점들의 많은 부분이 자기의 시스템이 타 시스템과 갖는 상호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개별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한다고 하여도 확률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부실한 실무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삼풍의 사고를 이러한 시스템 개념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구조물의 안전과 방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안전 장치가 개별 시스템에 분산되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충격은 이렇게 많은 안전 장치의 어느 것 하나도 원래 의도한 바와 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개별 시스템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Interface)가 관리되지 못한다면 그 보강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이 도입된 책임감리 제도라는 시스템이 실무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것도 결국은 그 감리 시스템 자체의 문제보다도 이 감리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설계나 현장 시공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역할 정의가 분명하지 못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의 재발 방지라는 차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건축실무의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 전문가가 가장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개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열거해 본다면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각 시스템이 가지는 역할과 실무 책임의 한계가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시스템 쌍방간의 계약 내용이 보다 공평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계약 관행의 개선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건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공급 및 유지관리 방식도 융통성있게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은 관(官)에 의한 실무 통제가 증가할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실무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계와 시공, 더 나아가 유지관리의 주체까지도 하나의 조직으로 통

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시스템을 지원할 전문 인력과 그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각 개별 시스템은 건축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래서 건축교육도 건축실무라는 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이 되어, 건축실무의 각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적당주의부터 뜯어 고치자

Break of a Bad Custom

全泰秀 / 서울시 건설본부장  
by Cheon Tae-Soo

### 1. 서론

건설분야에서는 94년을 성실시공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시공을 위하여 안전관리, 품질관리, 각종제도 개선 등을 노력하던 중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이어 갑작스런 성수대교 붕괴 및 이번 삼풍백화점 대형사고 발생으로 건축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성장에 급급하여 안전과 품질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을 내실있게 거치지 못하였다는 점과 한국적인 적당주의 행동양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건축은 기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라는 전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부실을 방지할 수 있으나, 설계만 완료하여 시공업자에게 맡기면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민간부분의 건축물은 설계비와 감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고, 사후관리 등은 관심 밖의 사항으로 인식되어 설계부실, 시공부실을 시정에 감리감독하는 체계가 되어 있지않고, 건물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안전에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부실시공의 원인

그동안 각계에서 발표된 부실공사의 원인을 살펴보면,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의 부족, 건설자재 수급불균형, 인력수급불균형, 건설종사자의 책임의식 결여, 기술능력부족 및 기술개발 미흡으로 분석되고 있다.

#### 가. 공사비 및 적정 공기부족

기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공기를 산정하여 공사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의 “빨리빨리”라는 속성과 비전문가인 건축주의 이익만을 생각하다보니 공기부족이 많으며, 사회에 만연한 적당주의 양식과 무리한 공사비 삭감으로 인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자는 실제기능인에게 그 손실을 전가하게 되었으며, 기술이 없는 기능인이 고용되고, 기능이 있는 고용인도 부실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나. 자재 인력수급 불균형

'90년도 초반부터 신도시 건설 등 건설불량 증가로 인력 및 자재수급에 차질이 생겼으며, 이에따라 불량자재 사용 및 기능이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게 되어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심지어 톱만 잡으면 목수, 흙손만 잡으면 미장공 행세를 하는 환경에서 감독이 아무리 철저히 한 다해도 주어진 기능이상으로 공사 마무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더욱이 3D 산업기피 현상으로 건설인력이 3차산업으로 이동되는 사태로 발전, 인력난을 가중시켜 왔다.

#### 다. 건설인의 의식

현행 경쟁원리에 입각한 공사 입찰제도는 당연한 사항이다. 그러나 적정공사비에 근거한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덤핑 등 저가 입찰로 수주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손실을 하도급자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의식과 불량자재 사용으로 손실을 만회하려는 관행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기능인 역시 자신이 일한 부분은 자신이 책임지려는 장인정신이 부족하여, 많은 일당을 쫓아 오늘은 이 현장 내일은 저 현장으로 떠돌아 다니며, 일당만 받으면 되다는 무책임 또한 부실의 요인이 된다.

#### 라. 기술개발 및 실패사례 규명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개발은 본인이 느끼는 것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건설공사는 대부분이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밀한 시공과 완벽한 자재는 기계화된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더욱이 기능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함으로써 공장생산력을 높이고 현장작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실을 방지하고 시장개방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계화 시공에 역점을 두어, 부실을 방지하여야 한

다.

이제는 벽돌을 쌓고 미장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공사례 발표는 잘하나, 실패사례는 책임문제 때문에 은폐한다. 실패사례를 두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누구를 문책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건설기술의 발전 차원에서 원인규명 및 기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3. 대책

전문성 있는 감리자 및 기능공을 양성하고,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책정,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단계에서 전문성 있는 감독 및 감리자가 참여하여 사업기간 및 공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현재 한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감리자는 수천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건축물이 대형화, 고도화, 복잡화 되고 품질에 있어서 고도의 성능이 요구되며 신공법, 신기술, 신재료의 발달에 의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감리자의 분야별 전문화와 감리자를 우대함으로써 우수인력이 감독 및 감리업무를 선호하도록 하여 성실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능인 재교육이 절실하나, 소위 집장사 밑에서 배운 미장공은 미장을 3회하는 이유도 모르고 1회 미장이 원칙인 줄 알고, 벽돌공은 일일 쌓기가 1.2m인데 하루에 3m이상 쌓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건설현장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다 보니, 벽균열과 침하 현상은 당연한 결과가 되었다. 감독이 제재를 가하면 오히려 감독자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기능공에 대해 최소한의 공사원칙을 교육하는 기능공 양성 및 재교육이 절실하다. 자기가 시공한 공사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장인 정신교육도 병행하여야 한다.

#### 가. 적정한 공사비 하도급자에 보장

부대입찰제도(발주자가 입찰자로 하여금 하도급할 공종 및 하도급 가격을 결정한 하도급 계약서를 입찰서에 첨부해서 입찰토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사낙찰 후에 당초 하도급 계약서상의 하도급자가 시공하여 하도급 계열화 촉진 및 원청자와 하도급자의 분업적 협력 관계를 유지토록 하여, 적정한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일한 하도급자와 기능공에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으니 부대입찰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자동화, 표준화, 건설기술개발

품질 향상 및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 표준화 및 조립식 공법을 개발하고 자동화 산업용 로봇을 적극 도입하여 노동력 부족의 난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또한 고령화 및 3-D산업기피 현상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막고, 품질 향상 및 노동재해의 방지를 위해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지상과제가 된다.

이는 일부 업체에 의한 개발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 개발 보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설계의 모듈화, 자재 표준화를 적극 반영 시공성이 있는 설계가 우선 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재의 고품질화를 위해 공장제작 등 조립식 공법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 다. 사후평가

사후평가 철저히 조사, 설계, 감리, 시공 등 부실요인에 대한 반복적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신이 경험한 부실요인을 기술자 양심으로 문서로 남길때 면죄부를 주는 제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록 등 건물유지관리 기록부 비치도 의무화 하여야 한다.

#### 라. 시공부문의 부실방지 대책

- 총체적 안전관리 품질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 시공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를 시공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하도급자의 의견존중)
- 중간검사 및 준공전 예비검사를 철저히 하여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다른업무에 중복되지 않고 품질관리에만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현장 종사자 및 기능공 의식 개혁 및 책임시공 특별교육과 기능공 시공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공사 개시전 현장책임자가 현장설명회를 열어 공사장 안전과 구체적 시공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현장 근로자 편에서 복지시설(숙소, 샤워장, 휴식공간, 식당, 주차장) 및 주변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 우수사례를 발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 4. 결론

우리 건설은 세계화 물결속에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

여 잘못된 관행의 물에서 벗어나야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실의 원초적인 사항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건설회사는 외국에 나가면 잘하고 국내에서는 부실공사를 한다는 말을 낯뜨겁게 들었다. 혹자는 감리제도 미흡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는 적당주의 양식이 문제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정신 개혁을 하여 경영자는 참된 가치관과 직업의식을 중간관리 기술자는 자기기술개발과 책임의식을, 현장 기능인은 내가 시공한 현장은 내가 책임지는 장인정신을 길러야 하고, 내 가족을 위한 집을 짓는다는 정신으로 일할때 부실공사가 추방 된다고 생각한다.

관은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시행과 투철한 공사관리가 필요하며, 기획, 조사, 설계, 시공감리,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끝까지 책임지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이땅에서 부실공사가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건축물이 붕괴될 때마다 가슴 철렁하는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다.

## 감리제도의 개선책

Improvement on The Architectural Supervision System

元鍾一 / 세종건축  
by Won Chong-Il

우리의 건축물, 구조물의 붕괴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우암상가, 행주대교, 성수대교가 차례로 무너졌을 당시 어떤 건축인이 이제 우리의 모순된 건축문화의 병리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시초현상이라고는 참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었다.

지난날 우리가 해외공사현장에서 우리하고는 사뭇 다른 외국의 건축문화에 접하면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누구나 반문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의 그러한 "호화스런 낭비"를 우둔하다고 비웃고 그저 우리 국내식대로 "가장 저렴하게 대충 빨리"하려다가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의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하자보수에 매달리면서 엄청난 적자를 보

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쓰라린 경험조차도 우리에게 반성적 계기가 되지 못하고 그당시 오히려 정부와 언론에 의해 국민에게 정반대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호도되면서 우리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식" 대로의 공사 형태가 관행화 되었던 것이다.

건물붕괴의 상징처럼 되있는 와우아파트로 부터 삼풍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련의 붕괴사고는 우리의 잘못된 공사관행, 대중의 문화의식, 정치, 행정, 그리고 건축인 자신의 직업인으로서의 패배의식 및 건축업계, 단체 사이의 이기적 갈등 등에 이르기까지 어느것 하나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에 의해 야기되었다.

따라서 건축감리제도가 이러한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재의 열악한 건축문화환경을 여하히 극복하고 실제적으로 행세할 수 있는 제도로써 우리의 공사현장에서 자리매김 하는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건축감리업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발주에서부터 설계, 시공, 건축행정 및 건축물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건축전체과정의 유기적 관련업무 중 한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축감리제도의 정상적 자리매김은 위와같이 현재의 우리 건축문화수준이라고 하는 외부적 영향과 그리고 같은 건축업무 분야 중 일부라고 하는 내부적 관계속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 1. 외부적 영향에 대하여

1962년 처음으로 현대서구식 건축법규가 제정된 후 근 30여년 동안이 우리의 서구적 건축문화의 보급, 발전 역사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누구나 공감하듯이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고자 오로지 경제성장 지상주의에만 매달렸던 시대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건축산업현장은 정치목적 또는 자본경제논리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참다운 건축기술력의 발현이 그 사명이요 본질이라고 하는 너무도 기본적인 상식이 무시되었던 것이었다. 학구적이고 정교한 건축기술력이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 대중에게도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건축문화풍토가 이런 왜곡된 가치관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또한 서구적 민주산업사회를 이룩하는데 있어 우리의 통치방식 속에는 여전히 "사농공상"의 유교식 권위주의가 배어있어 각 직업계층 사이의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사회 곳곳에 갖가지 불균형 현상의 피해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축분야는 단순하게 하나의 전문분야로써 취급하기 어려운 문화적 복합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경우 또한 이와같이 왜곡된 정치나 행정, 왜곡된 경제의 논리가 건축의 본질적 가치를 소외시켜 발생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건축의 본질적 가치라 함은 그 첫째가 예술적 가치 둘째, 사용목적적 가치 즉 기능 셋째, 생명을 보존하는 구조의 안정적 가치를 지칭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와같은 건축의 본질적인 가치가 우리 이 땅에서는 정치엘리트로부터 서민대중 심지어 같은 건축분야의 업계에 이르기까지 적당히 무시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열악한 건축문화환경으로 인하여 건축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많은 건축인들이 전문직업인으로써 패배의식을 갖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건축의 본질에 대한 가치를 몰각하고 있는 업계의 특세로 인한 갈등마저 겪고 있기도 하다.

건축공사 감리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적 환경영향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책을 열거하면

첫째, 건축산업현장이 더이상 정치, 행정, 자본경제의 이기적 논리의 도구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로지 건축 예술 및 기술논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상식화되어야 하고

둘째, 현사회의 만연되어있는 “대충 빨리” 건축하려는 적당 조급증으로 증득된 대중의식이 질적으로 반전되어야 하며

셋째, 건축분야에 관한 한 건축 및 건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건축전문 기술인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 및 행정기구상의 제도적 참여장치를 만들 것이 요망된다.

이상과 같은 외부적 환경의 개선은 건축감리업무가 건축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 확고한 문화적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건축의 다른 분야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문화적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건축의 다른 분야와의 관계정립

건축감리업무는 건축물의 발주에서 부터 설계, 시공, 건축행정 및 건축물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건축전체 과정의 유기적 관련업무중 한 부분이다. 우리사회에서 건축감리는 법적형식으로는 근 30년 이상 존속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 업무가 건축물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89년 이전까지는 시공감리업무 독자성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고 89년 이후에 비로소 건기법에 의해 대형공공건물에 한해 공사감리라고하여 미흡하게나마 시행하고 있고 민간공동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도이다.

소형건물에 대해서는 그나마 법적 시공업자 없이 건축주 자신이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감리의 적용 요건마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수행해야 할 현장조사업무를 민간설계사무소에 행정위임, 이것이 마치 감리업무인 양 잘못 호도됨으로써 설계사무소가 의무사항이 아닌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정말로 무모한 피해를 떠안고 있기도 하다.

이와같이 우리의 공사감리제도는 아직도 정상적인 형태로 정착하기에는 요원한 수많은 난제와 시행착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건축감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감리업무와 유기적으로 관련된 타 건축분야들은 아래와 같은 책임과 협력관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최초 발주자의 합리적인 발주의지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련의 건축업무의 정상화와 직결된다. 정상적인 설계와 시공 및 감리업무가 보장되게 하기 위하여 여하히 적정하게 발주공사비를 책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으로써 이에 대한 합리적 의지야말로 건축문화발전의 근원적 진일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인 과제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품셈 및 노임단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책무로써 이기적으로 건축공간을 무단용도변경하거나 크기를 증가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독자적인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하며 건축기술 용역을 제공한 감리자에게 책임을 이중으로 부과하여 업무능률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무모한 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리자에게는 단지 발주자와 계약상 맺어진 시공품질 확인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을 때 또한 이로 인하여 공공에 피해를 주었을 때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설계작업은 더욱 더 정교하고 건축관련 분야별로 세분된 내용으로 작성되도록 행정제도가 추진되어야 한다. 정교한 도면을 토대로 하였을 때 감리업무가 충실히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사현장에 QC와 Shop Drawing 업무를 시행하여 감리업무활동을 섬세하고 원활하게 해야 한다.

넷째,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법적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 기초적인 소규모 현장에서부터 시공감

리 문화가 뿌리 내리게 함으로써 현재의 적당 조급증으로 증독된 대중의식을 전반적으로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건축행정은 주로 건축주의 공공에 대한 이기적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으로써 시공상의 사용재료 및 조립작업의 품질을 감시하는 시공감리와는 근본적으로 그 책임 한계가 구분되어야 한다.

끝으로 건축감리체계는 건축가의 예술적 표현의지를 보장하는 설계감리와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시공감리로 구분되어야 하며 향후 시공감리는 가능한 한 설계업 또는 시공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감리업무만을 전담하는 분야별 건축관련 전문기술인으로 구성된 감리전문회사를 육성하여 수행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감리의 책임과 개선방향

The Responsibility of Architectural Supervision

朴武一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전문위원  
by Park Moo-Il

성수대교 붕괴에 이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걸쳐 우리 건설기술이 다시 한번 망신을 당하고 신용이 추락되는 사건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은 건축물 모두를 불신하게 되고 앞으로 해외건설수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커다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공사는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단계를 거치며 첫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유기적으로 완벽하게 시행되어야 양질의 건축물로 완성·유지될 수 있다. 그간 발생된 대형사고들은 이들 단계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다 할 수 있겠다.

### 1. 감리의 책임

시공감리의 중요성 때문에 건설관리기술법에도 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 세부업무범위는 첫째 시공계획의 검토, 둘째 공정표의 검토, 셋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네

째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섯째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여섯째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확인, 일곱째 품질관리시험계획실시의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여덟째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아홉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열번째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열한번째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열두번째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이다.

이와 같이 시공감리에 대한 업무는 분명히 설정되어 있고 또한 이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정업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1)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2)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 3)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 4)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5)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6)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 7) 다른사람에게 자기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 수첩을 대여한 때
- 8)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겸직한 때
- 9)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요청이 있는 때 등이다.

이와 같이 제도는 그런대로 만들어져 있으나 현실적인 이행환경 등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부실감리로 많은 감리회사가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정업조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실태

최근 건설기술연구원의 조사('94. 7. 30)에 의한 감리분야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 1) 감리자가 감독자의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로 감리자의 역할이 미흡
- 2) 감리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관리능력의 보유미비

- 3) 감독자와 시공자간의 상충된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의사전달 수행 미흡
- 4) 시공자 및 부품 공급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및 감독업무대리수행 기능 미흡
- 5) 시공요건 및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절차 수립 또는 승인 및 그 성과의 검사 등의 미흡
- 6) 감리자는 사업 및 공사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문 분야별로 능력이 있고 윤리성 및 책임성이 있는 시공기술전문가, 공종별 품질·공정·자재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나 기술능력수준은 미흡하고 절대소요인원도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된 감리제도상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개선방안

국내건설업체들이 해외공사에서는 부실없이 잘하고 있지만 국내공사에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우리의 건설기술이 부족하지는 않고 단지 국내에서는 이들 여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가. 감리업무에 대한 수행능력 향상

법상으로 주어진 감리업무는 광범하나 그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별로 감리를 할 수 있는 감리대가가 책정이 되고 있지 않아 적재, 적소, 적기에 필요한 전문분야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다. 특히 개인 발주공사의 경우 설계자 감리차원의 감리비만으로 시공감리까지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점이 해소되려면 우리 기술자들이 단결하여 과당경쟁을 삼가하며 제대로 대가를 받고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 나. 설계자와 시공감리의 역할분담

현재 설계자와 시공감리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앞으로 설계자는 설계를 토대로 시공되는지의 감리와 시공기술자에 의한 시공감리가 상호보완관계에 의거 감리가 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감리기간도 착공시점이 아닌 발주단계부터 시작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겠다.

#### 다. 감리요원의 능력향상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는 이제 시작되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감리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먼저 감리자 스스로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으며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으로 고도화된 감리요원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리자의 위상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 라. 감리자의 법적권한 확보

감리가 발주자에 대한 수주자란 관계에서는 발주자의 요구를 견제가 어려워 적절한 감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감리자의 법적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즉 발주자는 관련단체에 감리비를 불입하고 관련 단체에 등록된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도 생각해봄직하다.

#### 마. 감리자의 엄정한 업무수행자세

우리는 모든분야에서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연결고리 때문에 엄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한다. 현재 외국 감리회사의 참여에 대한 발상동기도 이러한 연결고리를 제거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사고방식에서 탈피, 전문가로서의 엄정한 업무수행자세가 요망된다.

그간 대형사고의 그늘에는 성과위주의 발주자나 관료의 요구에 대해 과감히 주장하지 못한 우리기술인들의 방관자세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감리제도는 그런대로 갖추어져 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여건(환경)은 미비함에도 법칙 등은 엄하게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으로서의 자세를 확고히하여 우리들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엄정히 업무를 수행할 때 부실은 멀리 추방될 것이고 나아가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반성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위상을 찾아야겠다. 불량에서 탈피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먼저 갖추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

항상 명심해야 할 말은 건설공사는 작업공간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자는 자기가 한 일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